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 안 번 호	4339

제안연월일 : 2006. 5. 1.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증진과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 특별위원회」(이하 "평화통일특위"라 한다)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25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국회는 2004년 7월 9일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핵개발 관련 상황보고, 개성공단사업 추진상황보고,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상황보고, 6.15 통일대축전 및 남북장관급회담 결과보고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보고를 듣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난 2005년 6월 30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만료되어 활동이 종료된 바 있음.

그러나 남북관계의 다양한 현안들을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발전시키면서 겨레의 염원인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평화통일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이하 "평화통일특위"라 한다)를 구성하려는 것임.